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권영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400

발의연월일: 2024. 9. 27

발 의 자: 권영진 • 권영세 • 조은희

서범수 · 윤영석 · 박충권

김형동 · 엄태영 · 김상훈

조경태 · 임종득 · 박정하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부동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격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시키고 공시가격의 균형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('20.4월, 부동산공시법 개정)되었으나, 계획의 시행 과정('21~'22년)에서 큰 폭의 공시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부동산 보유세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부담과 불편이 야기되었음.

이에 시세반영률 인상으로 매년 과도한 공시가격 상승이 반복되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동 계획 수립의 근거 조항을 삭제하되, 공시가격의 균형성과 신뢰성 제고가 중점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 관에게 적정가격 공시를 위한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 임(안 제2조의2, 제24조, 제26조 및 제26조의2).

아울러, 공시가격이 조세·부담금, 복지 등 관련 제도에서 안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정가격의 성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장가치

를 토대로 산정한 공적 기준가격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(안 제2 조).

법률 제 호

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5호 중 "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"을 "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토대로 부동산 가격의 변동성 및 부동산 유형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공적 기준가격"으로 한다.

제1장에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2(적정가격 공시를 위한 국가의 책무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 동산공시가격이 부동산의 유형·지역 등에 따른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공시가격의 조사·평가를 위한 근거자료 수집·분석, 현장조사와 지역분석 등을 통하여 부동산 공시가격이 정확하게 산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24조제1항제17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18호를 제17호로 한다.

제26조제2항 중 "부동산의 시세 반영률, 조사·평가"를 "공시가격의 균형성 제고 수준, 공시가격의 조사·평가"로 한다.

제26조의2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"적정가격"이란 토지, 주택	5
및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	
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	
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	
될 가능성이 <u>가장 높다고 인</u>	높다고 인정되는
<u>정되는 가격</u> 을 말한다.	<u>가액을 토대로 부동산 가격의</u>
	변동성 및 부동산 유형의 특
	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
	장관이 정하는 공적 기준가격
<u><신 설></u>	제2조의2(적정가격 공시를 위한
	국가의 책무) ① 국토교통부장
	관은 부동산 공시가격이 부동산
	의 유형·지역 등에 따른 균형
	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
	<u>야 한다.</u>
	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공
	시가격의 조사·평가를 위한 근
	거자료 수집·분석, 현장조사와
	지역분석 등을 통하여 부동산
	공시가격이 정확하게 산정되도

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24조(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 회)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 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"위원 회"라 한다)를 둔다.

1. ~ 16. (생략)

17. 제26조의2에 따른 계획 수 립에 관한 사항

18. (생략)

② ~ ⑦ (생 략)

제26조(공시보고서의 제출 등) ① 지 (생 략)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, 제16조에 따른 표준주택가격, 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, 제20조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및 제22조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공시하는 때에는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, 조사 ·평가 및 산정 근거 등의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.

제24조(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
회) ①
1. ~ 16. (현행과 같음)
<u><</u> 삭 제>
<u>17</u> . (현행 제18호와 같음)
② ~ ⑦ (현행과 같음)
세26조(공시보고서의 제출 등) ①
(현행과 같음)
②
고기기거리 그처서 제기 스
공시가격의 균형성 제고 수
<u>준, 공시가격의 조사·평가</u>
·

제26조의2(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| <삭 제> 계획 수립 등) ① 국토교통부장 관은 부동산공시가격이 적정가 격을 반영하고 부동산의 유형 • 지역 등에 따른 균형성을 확보 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시세 반 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하고, 이 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 립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 는 때에는 부동산 가격의 변동 상황, 지역 간의 형평성, 해당 부동산의 특수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-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공청회를 실시하고,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- ④ 국토교통부장관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동산공시가격 을 결정·공시하는 경우 제1항 에 따른 계획에 부합하도록 하 여야 한다.